

S14BL 공급대상 상업업무단지

(22.08.08 기준)



범례

- 분양중 (확지 및 번지)
- 주차장용지
- 분양완료



※ 태안군 태안읍 반곡리 1149-70번지 일원

S14BL 공급대상 용지

번호	면적(m ²)	매각단가(원)	매각금액(원)
1	1,769.00	847,000	1,498,343,000
2	1,758.80	847,000	1,489,703,600
3	1,758.50	847,000	1,489,449,500
4	1,758.30	847,000	1,489,280,100
5	1,758.40	847,000	1,489,364,800
6	1,430.80	756,250	1,082,042,500
7	1,432.90	756,250	1,083,630,600
분양완료	2,048.70	847,000	1,735,248,900
9	1,821.30	847,000	1,542,641,100
10	1,816.20	847,000	1,538,321,400
11	1,695.10	847,000	1,435,749,700
12	1,270.40	847,000	1,076,028,800

번호	면적(m ²)	매각단가(원)	매각금액(원)
분양완료	1,256.10	756,250	949,925,600
15	1,260.40	756,250	953,177,500
16	1,869.90	847,000	1,583,805,300
17	1,869.70	847,000	1,583,635,900
18	1,869.70	847,000	1,583,635,900
19	1,870.50	847,000	1,584,313,500
21	2,931.90	847,000	2,483,319,300
분양완료	1,455.90	756,250	1,101,024,300
32	1,465.50	756,250	1,108,284,300
34	1,454.20	756,250	1,099,738,700
분양완료	2,824.10	299,000	844,405,900
분양완료	2,823.80	299,000	844,316,200

S14BL 허용용도

위 치	구 분	도입가능시설
S14BL	일반 상업 지역	<p>◆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 건축물종 건축법시행령 ◆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 가목: 공연장 · 나목: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장 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나~마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 나목: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 다목: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 라목: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마목: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21 ~ 28회지에 한함) - 위락시설 중 가~다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 가목: 단란주점 · 나목: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목: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비슷한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 가목: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나목 · 가목: 주차장 · 나목: 세차장 - 방송통신시설 중 가~나목, 라목 · 가목: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 시설 포함) · 나목: 전신전화국 · 라목: 통신용 시설 - 관광휴게시설 - 건축 관련 사항 · 건폐율: 80% 이하 (주차전용 건축물: 90%이하) · 용적율: 700% 이하 (주차전용 건축물: 1,500%이하) · 높 이: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태안군 주차장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름</p>

S14BL 세부 허용용도 예시

위 치	도입가능시설
S14B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잡화, 의류, 세탁소 - 금융업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 종교집회장, 인터넷 게임업 - 휴게일반음식점, 동물병원 - 학원, 교습소 - 종교시설 - 도·소매시장, 주유소, 세차장 -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 숙박시설(일반생활숙박, 관광) -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p>※ 허용용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건축 및 인허가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합니다.</p>

주차장 허용용도

위 치	도입가능시설
주차장 8/9	<p>◆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29 ~ 30조에 의거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p> <p>◆ 단,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 시 주차장법 및 태안군 주차장 조례에 부합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 4항 규정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 한 부대 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 를 초과 할 수 없음</p>

분양 관련사항

※ 분양 대상용지는 선착순으로 잔여용지를 담당자에게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041) 674-6076 / 041) 673-3501
 담 당 자 : 주성호 책임매니저 / 장동민 책임매니저

S14 현황

Ver. 2022.8.8



15m 도로(중로2류)

중2-1

25m 도로(대로3류)

15m 도로(중로2류)

완충녹지 : 2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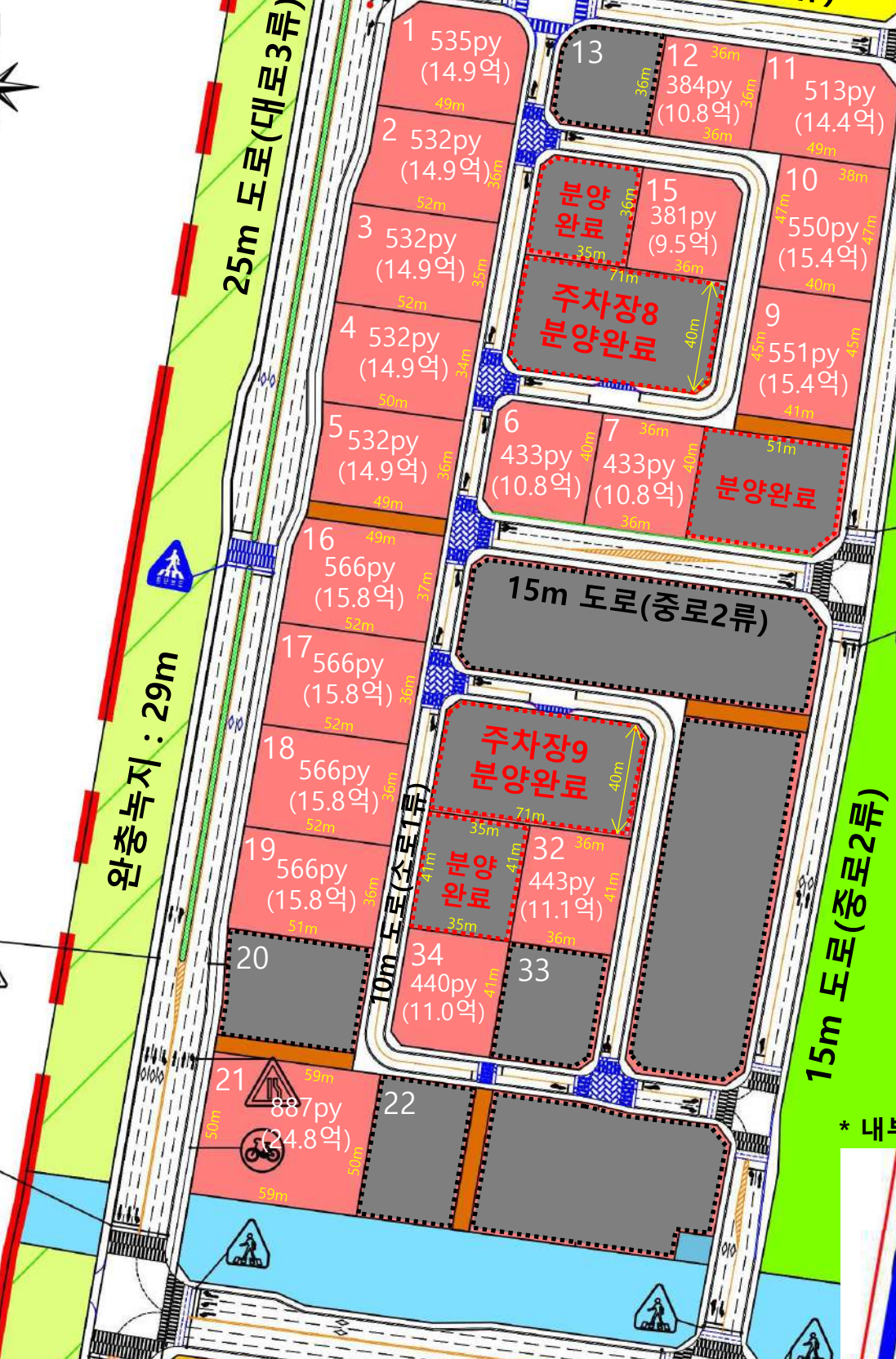
10m 도로(소로1류)

15m 도로(중로2류)

* 내부도로 : 10m

20m 도로(중로1류)

대로3류	B=25m
중로1류	B=20m
중로2류	B=15m
중로3류	B=12m
소로1류	B=10m



S14 건축한계선 및 진출입불허구간



X : 차량 진출입 불허
 ▶ : 차량 진출입 가능

